



안심거래서비스 신청서

1. 임차인	성 명 (상 호)		휴 대 전 화	
	생 년 월 일		이 메 일	
	계 좌 번 호		은 행	(본인명의계좌에 한함)
2. 임대인	성 명 (상 호)		휴 대 전 화	
	생 년 월 일		이 메 일	
	계 좌 번 호		은 행	(본인명의계좌에 한함)
3. 보증금	계 약 금	금 액	입 금 일 자	오전 () 오후 ()
	잔 금	금 액	입 금 일 자	오전 () 오후 ()
4. 안심거래사업자 (에스크로사업자)	성 명 (상 호)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주)		전 화 02-3144-2470
	주 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4다길 41, 14층(마포동, 마포타워)		
	안심거래계좌	303-20-217451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이 메 일	escrow@firstam.co.kr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일자:	년	월	일
임차인:	(서명 / 인)			임대인:	(서명 / 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안심거래서비스사업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 제 1 항 제 1 호, 제 17 조 제 1 항 제 1 호, 제 23 조 제 1 호, 제 24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임차인과 임대인은 안심거래서비스사업자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임차인 및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9 조에 해당하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본 동의서는 안심거래서비스신청서 체결을 위해 필수적 사항으로, 아래 필수 사항들에 동의 하셔야 안심거래서비스신청서 접수 및 신청완료 진행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여 안심거래서비스신청서 체결을 진행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임차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임대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안심거래서비스 상담, 안심거래서비스 신청서 체결 및 절차 안내를 위한 목적
- 안심거래서비스 신청서의 체결, 관리, 상담, 이행, 서비스 제공, 수수료율의 산출
- 안심거래서비스신청 및 보증금 신청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법규 및 계약상 의무 이행
- 안심거래서비스신청서 및 서비스 관련 분쟁 대응, 민원 처리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성별, 내/외국인 여부,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계좌정보]
- 기타 정보 [임대차계약서 등의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
- 안심거래서비스사업자가 수집·관리하는 안심거래서비스신청 정보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당해 안심거래서비스신청서 효력의 종료시점이며,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증금 반환 또는 지급 시 그 시점까지입니다. 단, 안심거래서비스신청서의 종료 후에도 안심거래서비스 관련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필수)

임차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임대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코리아사이버호스팅
- 법원,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포함)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안심거래서비스신청서 체결자에게 SMS/LMS 전송에 따른 통지 업무 수행 및 기타 법령에서 요구하는 의무 준수
- 안심거래서비스신청서 상 반환 및 지급요청 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법규 및 계약상 의무 이행
- 안심거래서비스신청서 관련 분쟁 대응, 민원 처리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당해 안심거래서비스신청서 효력의 종료시점이며,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증금 반환 또는 지급 시 그 시점까지입니다. 단, 안심거래서비스신청서의 종료 후에도 안심거래서비스 관련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3. 고유식별정보 처리 관한 사항 (필수)

임차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임대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안심거래서비스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23 조 및 제 24 조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수집·이용·제공 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자동차운전면허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처리]

4. 부동산임차권용권리보험 가입 권유에 관한 사항 (선택)

임차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임대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안심거래서비스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권리보험상품 소개 및 판매 등을 위하여 임차인 및 임대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부동산권리보험 상품, 서비스 소개 및 판매, 시장조사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성별,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계좌정보]
- 기타정보 [임대차계약서 등의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안심거래서비스신청서 종료 시점까지

동의일자:	년	월	일	동의일자:	년	월	일
생년월일(주민등록기준):	년	월	일	생년월일(주민등록기준):	년	월	일
임차인:	(서명 / 인)			임대인:	(서명 / 인)		

안심거래서비스 신청서 합의내용

[유의사항]

1. 안심거래서비스신청서의 신청기한은 임대차계약서 날인완료 시점부터 임대차계약서상에 명시된 잔금일 삼(3)영업일 전까지이며, 해당 신청기한 내에 안심거래사업자에게 안심거래서비스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한다.
2. 안심거래서비스신청서 접수 시 임대차계약서 날인본 사본이 함께 총 2 장이 제출되어야 하며 안심거래서비스신청서 상에 명시된 계약금과 수수료를 명시된 안심거래계좌에 입금되어야 신청이 완료된다.
3. 안심거래서비스신청서와 함께 접수된 서류들의 정보는 신청완료 이후 변경이 불가능하다. 단, 보증금 송금일자는 안심거래사업자에게 유선 통보하여 변경 가능하다.
4. 안심거래서비스를 사용할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며 안심거래수수료는 보증금의 0.05%이다.
5. 안심거래서비스 신청 관련하여 진행되는 모든 유선 업무는 녹취된다.
6. 보증금 송금일자 기준으로 보증금 전액과 안심거래수수료가 안심거래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안심거래사업자는 별도의 유선연락을 취하지 아니한다.
7. 임차인의 송금요청에 따라 보증금 송금이 가능한 시간은 영업일 영업시간 및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 시까지로 제한한다.
8. 휴대전화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이메일로 회사의 통지 등이 이루어진다. 단, 휴대전화 번호가 없는 경우 통지 등의 업무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9. 임대인은 안심거래서비스신청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임차인이 계약금을 안심거래서비스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를 임대차계약서에 의거하여 임대인 본인의 계좌에 계약금을 입금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에 동의한다.

1. 정의

- 가. “안심거래서비스 신청서”란 보증금 안심거래서비스 신청서 양식과 보증금 안심거래서비스 합의내용 양식 모두를 말한다.
 나. “안심거래사업자”란 보증금 안심거래서비스 신청서 양식에 명시된 에스크로서비스를 제공하는 퍼스트에메리칸권원보험(株)을 말한다.
 다. “안심거래계좌”란 보증금 안심거래서비스 신청서 양식에 명시되어 있는 안심거래사업자의 안심거래계좌번호이다.
 라. “보증금”이란 보증금 안심거래서비스 신청서 양식에 신청인이 명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거한 계약금 및 잔금 모두를 말한다.

2. 안심거래계좌의 개설 및 관리

- 가. 안심거래사업자는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관련하여 전용 안심거래계좌 사용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동 계좌에만 입금하여야 한다.
 나. 보증금 관리는 ‘4’의 ‘가’ 상 명시된 규정, 송금 및 반환은 ‘5’의 ‘가’ 내지 ‘마’ 상 명시된 규정 따라 처리한다.

3. 보증금 안심거래서비스 신청서의 개시 및 종료

안심거래서비스신청서는 최초 계약금이 안심거래계좌에 입금된 때부터 개시되어 아래 ‘4’ 내지 ‘5’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모두 정산된 때에 종료된다.

4. 보증금 안심거래서비스 업무처리

- 가. 임차인은 안심거래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안심보증사업자에게 지정된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나. 안심거래사업자는 위와 같이 예치된 보증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안심거래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이 안심거래사업자에게 예치되는 즉시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한다.
 (2) 임차인 송금승인요청 절차는 하기 ‘5’의 규정에 따른다.
 (3) 임차인 보증금 반환 요청 또는 임대인 보증금 지급 요청은 하기 ‘5’의 규정에 따른다.
 (4) 만약 안심거래사업자가 예치된 금액을 누구에게 양도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사자들의 권리들이 적절한 소송이나 소송절차로 완전히 결정되기 전까지 또는 법원이 안심거래사업자에게 그 계약금을 법원에 예치하도록 지시하기 전까지 총액 전부를 보관해야 한다.
 또한 안심거래사업자가 임대인과 임차인으로부터 타당한 서면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결정할 소송이나 소송절차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기소되지 않았다면, 안심거래사업자는 보관중인 금액을 법원에 예치할 어떠한 의무도 없으며 소송이나 소송절차를 제기할 의무도 없으며 예치금의 보관은 계속해야 한다. 안심거래사업자는 금전을 위탁 받은 제 3 자로서의 책임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안심거래사업자의 의무는 본 계약서에 명확하게 드러난 것에 한하며, 안심거래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선량한 신용 안에서 행동하지만 하면, 고의의 위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안심거래서비스신청서에 따른 모든 통지는 동 신청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상 명시된 전화번호 통화, SMS 또는 이메일로 전달되어야 한다.
 마. 안심거래서비스신청서의 내용은 동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당사자가 날인한 수정계약서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단, 보증금 송금일자 변경은 임차인의 유선통화로 가능하다.
 바. 보증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의 전산, 기술, 또는 재무 상태와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송금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안심거래사업자는 상기 ‘4’의 ‘나’의 (4)의 규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 안심거래사업자는 본 신청서상에 명시된 보증금과 안심거래수수료 전액 입금 확인 이전에는 송금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 보증금 전액 입금 확인 이전에 보증금 반환요청 및 지급요청 접수되는 경우 하기 ‘5’의 규정에 따른다.
 아. 안심거래서비스신청서 각 당사자는 신청서상 권리 및 의무를 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자. 기타 특별 조건

- (1) 안심거래사업자가 송금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는 안심거래사업자가 부담한다.
 (2) 안심거래수수료는 정해진 ‘수수료율’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며, 보증금 입금 시 함께 입금되어야 한다. 안심거래수수료는 본 신청서에 명시된 임차인 전화번호 통화, SMS 또는 이메일로 안내한다.

5. 보증금 송금·반환 요청 절차

- 가. 임차인은 본 신청서상에 명시된 보증금 전액과 안심거래수수료가 안심거래계좌에 입금되고 안심거래사업자가 보증금 전액 예치 확인 통보를 받은 이후 임차인은 안심거래사업자에게 송금승인 요청을 유선으로 통보한다. 안심거래사업자는 임차인의 송금요청 유선 접수 시, 본 신청서상에 명시된 임대인의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한다. 단,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 예치 확인 통보 이전에 송금승인 요청을 할 수 없다.
 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내용 불이행으로 보증금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 계약해제 사실관계가 기재된 보증금 반환 요청을 접수한다. 안심거래사업자는 반환요청이 접수되면 즉시 본 신청서상에 명시된 임대인에게 통화, SMS 또는 이메일로 보증금 반환요청에 대한 이의접수 기간에 대한 안내를 한다. 안심거래사업자는 임대인에게 반환접수 이의접수 기간 통보 이후 이의접수 기간인 십(10)영업일까지 이의접수 없을 시 본 신청서상에 명시된 임차인 계좌로 요청한 금액을 송금한다. 단, 임대인이 안심거래사업자에게 이의접수 하는 경우, 상기 ‘4’의 ‘나’의 (4)의 규정에 의거 법원의 최종판결, 법원의 공탁명령 또는 양 당사자의 최종 날인된 서면 송금허가서가 안심거래사업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보증금을 보관한다.
 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해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내용 불이행으로 보증금 지급요청을 하는 경우, 계약해제 사실관계가 기재된 보증금 지급 요청을 접수한다. 안심거래사업자는 지급요청이 접수되면 즉시 본 신청서상에 명시된 임차인에게 통화, SMS 또는 이메일로 보증금 지급요청에 대한 이의접수 기간에 대한 안내를 한다. 안심거래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반환접수 이의접수 기간 통보 이후 이의접수 기간인 십(10)영업일까지 이의접수 없을 시 본 신청서상에 명시된 임대인 계좌로 요청한 금액을 송금한다. 단, 임차인이 안심거래사업자에게 이의접수 하는 경우, 상기 ‘4’의 ‘나’의 (4)의 규정에 의거 법원의 최종판결, 법원의 공탁명령 또는 양 당사자의 최종 날인된 서면 송금허가서가 안심거래사업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보증금을 보관한다.
 라. 임차인은 안심거래계좌에 입금된 보증금이 계약금, 안심거래수수료 및 잔금의 합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초과분에 대한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 임차인은 초과 입금분에 대한 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안심거래사업자에 접수한 이후, 안심거래사업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서 상에 명시된 임차인 계좌번호로 송금한다.
 마. 안심거래사업자는 안심거래서비스신청서 상 명시된 보증금에 미달되거나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명시된 임대인 계좌로의 송금신청 요청을 승인할 수 없다.